

(주)오토기기 협력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서문

주식회사 오토기기(이하 "당사")는 자동차 도장 설비, 판금장비 및 관련 서비스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협력사들이 환경 보호, 인권 존중,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당사의 모든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자사의 하위 협력사에게도 이를 권장해야 합니다.

1. 인권 및 노동

1.1 자발적 근로

협력사는 강제 노동, 착취 노동, 인신매매 등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합리적인 통지 후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아동 노동 금지

협력사는 아동 노동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은 15세 미만(또는 해당 국가의 법적 최소 고용 연령 중 더 높은 연령) 또는 의무 교육 완료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는 건강, 안전, 도덕성을 해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1.3 근로 시간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비상 상황이나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 시간은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니다. 근로자에게는 7일마다 최소 1일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4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사는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법정 복리후생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로서의 임금 삭감은 금지됩니다.

1.5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폭력,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언어 폭력 등 비인도적 대우나 괴롭힘이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6 차별 금지

협력사는 고용 및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에서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 지향,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적 성향, 노조 가입 여부, 국적, 결혼 여부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1.7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보복, 위협, 괴롭힘 없이 근로 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안전 및 보건

2.1 산업 안전

협력사는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 평가, 관리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적 유지보수, 안전 작업 절차,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2 비상 대비

협력사는 비상 상황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비상 대응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여 인명 피해, 환경 영향,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비상구,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대피 계획, 교육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2.3 산업 재해 및 질병 예방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4 위생, 식품, 주거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 준비 및 보관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구, 난방, 환기, 개인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환경

3.1 환경 허가 및 보고

협력사는 필요한 모든 환경 허가, 승인, 등록을 취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3.2 오염 방지 및 자원 절약

협력사는 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자원 사용(물, 에너지, 원자재 등)을 절약해야 합니다. 폐수, 대기 배출물, 폐기물은 현지 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3.3 유해 물질 관리

협력사는 인체와 환경에 위험한 화학 물질 및 기타 물질을 식별하고, 안전한 취급,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폐기를 보장해야 합니다.

3.4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추적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윤리

4.1 비즈니스 청렴성

협력사는 모든 비즈니스 상호작용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부패, 갈취, 횡령, 뇌물 수수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4.2 부당 이익 금지

협력사는 뇌물이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4.3 정보 공개

협력사는 관련 법규 및 업계 관행에 따라 노동, 안전 보건, 환경 관행, 비즈니스 활동, 구조, 재무 상황,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4.4 지적 재산 보호

협력사는 지적 재산을 존중하고, 기술 및 노하우 이전 시 지적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4.5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협력사는 공정 거래, 광고, 경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독점 금지 및 공정 경쟁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4.6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협력사는 내부고발자의 기밀성과 신원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보복을 금

지해야 합니다.

4.7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공급업체, 고객, 소비자, 직원 등 모든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5. 관리 시스템

5.1 경영진의 의지 표명

협력사의 경영진은 본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지속적 개선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5.2 위험 평가 및 관리

협력사는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된 법규 준수, 환경, 보건, 안전, 노동 관행 및 윤리적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5.3 교육

협력사는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본 행동규범 및 관련 법규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5.4 시정 조치 프로세스

협력사는 내부 또는 외부 평가, 검사,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미비점을 시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6. 준수 및 검증

6.1 준수 선언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준수할 것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다.

6.2 검증 및 평가

당사는 협력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평가, 현장 방문,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6.3 시정 조치

당사의 평가 결과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협력사는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심각한 위반이나 개선 의지 부족 시 거래 관계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7. 문서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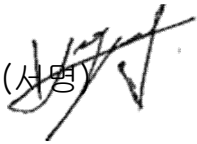
버전	제정/개정일	주요 내용
1.0	2025.03.	최초 제정

협력사 서약

당사는 주식회사 오토기기의 협력사 행동규범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사명: 더베스트

대표자: 곽 영 대 (서명)



날짜: 2025년 4월 25일

본 행동규범은 주식회사 오토기기의 모든 협력사에게 적용되며, 당사는 본 행동규범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